

전자증권 시행에 따른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19. 9. 16(월)]에 따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전자증권 시행일[19. 9. 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됩니다
2.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[19. 9. 11(수)] 까지 발행인(명의개서대행회사)에게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(증권사계좌)를 통지하고 실물증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
3. 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19. 9. 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

2019년 7월 15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
한류타임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승호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